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11월30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대통령령 제19143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동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진의 제2호)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협의회 위원의 임기)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인 위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방문증명서”를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이하 “북한방문증명서”라 한다) : 갈색
  - 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북한방문증명서 : 4면
  - 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북한방문증명서 : 10면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한방문증명서(이하 “남한방문증명서”라 한다) : 청남색
  - 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남한방문증명서 : 4면

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 남한방문증명서 : 10면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수시 남한방문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⑥관광목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이 발행하는 북한의 방문을 승인하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는 이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로, “남한주민은 방문 20일전까지”를 “남한주민 및 외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재외국민은 방문 10일 전까지”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4매”를 “1매”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적 사항

5. 북한의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

는 자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방문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북한을 수시 방문하는 자의 신고의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문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시북한방문신고서

2. 북한의 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북한의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6조제1항중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년의 범위안에서”를 “5년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동안 이를 소지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를 “(재외국민의 범위와 북한 왕래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의 제목“(접촉승인신청)”을 “(접촉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를 “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접촉 10일 전까지”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재외공관의 장에게”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로, “신청서류”를 “신고서류”로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고서
2. 인적 사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신고를 수리하거나 수리를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신청”을 “신고”로, “승인하기 전에”를 “수리하기 전에”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5호를 동항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종전의 제5호)중 “사전승인이”를 “사전신고가”로 한다.

5. 사전계획이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자

제1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접촉승인유효기간)”을“(접촉신고 유효기간)”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9조3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접촉승인을”을 “접촉신고의 수리를”로,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의3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접촉승인”을 “접촉신고의 수리”로 한다.

제20조중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2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출입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심사확인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3조”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13조 후단”을 “법 제13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중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취소절차)”를 “(청문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통일부장관”을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30일전에”를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로 하고, 동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그 밖에 취소에 대한 청문은 「행정절차법」의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협력사업의 승인)”을 “(협력사업의 승인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34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 본문중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환거래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40조제3호중 “외국환관리법 제7조”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로, “인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1조제1

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선박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을 “선박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행의 상업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47조중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를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통계자료의 제공에 대한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물품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통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조제1항제5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제46조제1항중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우편법”을 각각 “우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제48조중 “우편법”을 “우편법”으

로,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제50조제1항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본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동항제2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동항제3호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동항제4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동항제5호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동항제6호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동항제8호중 “교육세법”을 “교육세법”으로, 동항제9호중 “식물방역법”을 “식물방역법”으로, 동항제10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하고, 제5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며, 제52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고,

제53조제2항 및 제3항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제3항관련)

구분	근거법령	위 반 사 항	과태료액
1	법 제9조제3항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방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한 자	300만원 이하
2	법 제9조제5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300만원 이하
3	법 제9조의2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100만원 이하
4	법 제15조제2항	교역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이하
5	법 제18조제2항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7539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으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한 왕래, 북한주민의 접촉 및 교역 등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민원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북한간 왕래에 필요한 출입장소의 지정 확대(영 제2조)

(1) 남·북한의 합의로 연결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남·북한 주민이 금강산 관광을 하거나 개성공업지구 등을 통행하고 있어 이들 철도와 도로에 출입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를 각각 남·북한 주민의 출입장소로 추가 지정함.

(3) 남·북한 주민의 출입장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왕래하는 주민의 출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남·북·한 주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남·북한 교류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원처리절차 개선  
(영 제10조제1항, 영 제10조의2 신설, 영 제11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 (1) 남·북한 관계가 원만하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2)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신청기간을 방문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북한방문 등을 위한 신원조회시 경우 필요한 사항(인적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신원진술서를 간소화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북한왕래신고를 북한방문 5일 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3일 전까지로 단축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전접촉신고기간을 접촉하기 15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단축함.
- (3)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남북관계의 발전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마련(영 제54조 및 별표 신설)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3)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에 담당 공무원의 불합리한 재량을 줄이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11월30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오 영 교  
장 관